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남동구

제 1249호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조 례

○ 조례 제12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조례 제1253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6

○ 조례 제12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조례 제12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조례 제12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조례 제12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조례 제12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 조례 제12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7

○ 조례 제12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조례 제12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86

○ 조례 제12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2

○ 조례 제12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 조례 제12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100

○ 조례 제12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 조례 제12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8

○ 조례 제12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112

○ 조례 제12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8

○ 조례 제12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2

○ 조례 제12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0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남동구

제 1249호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조 례

○ 조례 제12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8

○ 조례 제12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0

○ 조례 제12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3

○ 조례 제12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6

○ 조례 제12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2

○ 조례 제12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7

규 칙

○ 규칙 제8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9

훈 령

○ 훈령 제31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 174

공 고

○ 공고 제2015- 11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7

○ 공고 제2015- 11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0

○ 공고 제2015- 1200호 도로지정공고 ····· 215

○ 공고 제2015- 12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6

○ 공고 제2015- 1205호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 결정 공시 ····· 222

○ 공고 제2015- 1207호 2015년 7월 정기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23

○ 공고 제2015- 1212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4

○ 공고 제2015- 1213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9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남동구

제 1249호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공 고

○ 공고 제2015- 12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9

○ 공고 제2015- 12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6

○ 공고 제2015- 12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91

○ 공고 제2015- 12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95

○ 공고 제2015- 12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0

○ 공고 제2015- 1222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1

○ 공고 제2015- 1225호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18

○ 공고 제2015- 12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25

○ 공고 제2015- 12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341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4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43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4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44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4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4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5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46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5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47

고 시

○ 고시 제2015- 102호 도로명주소고시 348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예탁금**"을 "**예탁금 (단, 재난관리기금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마련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재원 중 재난관리기금 예외 단서조항 신설 (제16조제1호)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3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6 및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별지 14,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17 및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20 및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1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23 및 별지 24와 같이 한다.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25 및 별지 26과 같이 한다.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27 및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 29, 별지 30, 별지 31,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1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 33, 별지 34, 별지35, 별지 36, 별지 37, 별지 38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제1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제2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제2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2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제2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4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1]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별지 제2호 서식〕

상 담 기 록 일 지

결 재	

연 번		접수일		상담방법		상담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련부서		특기사항					

상담요지

[별지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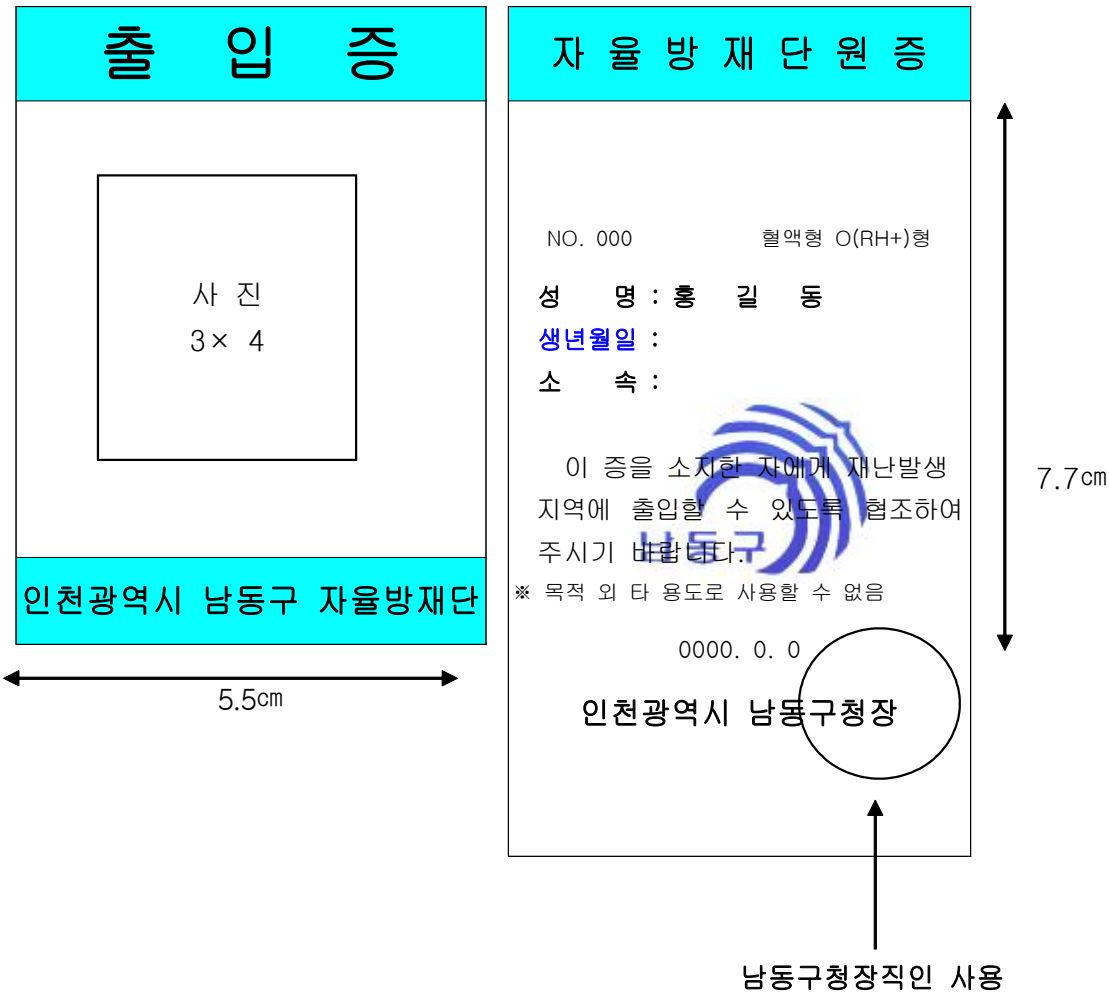

[별지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

20 년(하 · 동계) 부업대학생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연 락 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TEL H · P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학교명			학부 또는 학과	
	남동구 부업경력		년(하계 · 동계)	근무부서 (실,과,소,동)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모집공고일 현재)
2.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 년(하 · 동절기) 부업대학생 신청 접수증

성 명		생년월일	
학교 및 학과 학년		접수번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5]

■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 자 (원명)		
(2)생년월일		(3)군번(군인의 경우)	1
(4)국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이내)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27) 공 적 사 항			

[별지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강당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사
용
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단체명</td><td></td><td rowspan="2">전화번호</td><td>사무실</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H. P.</td><td>☎</td></tr>
<tr><td colspan="2">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td><td colspan="4">☐ 대강당 ☐ 소강당</td></tr>
<tr><td colspan="2">사용목적 및 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용시간</td><td colspan="2">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td><td>참석예정
인 원 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용시설 및 설비</td><td>기본시설
부속설비</td><td colspan="3">☐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프로젝터
☐ 기타 ( )</td></tr>
<tr><td>사용자설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 용 료</td><td colspan="4">금 (₩)</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4">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td></tr>
</table>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당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강당 사용(변경)허가서

<table>
<tr><td rowspan="4">사
용
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단체명</td><td></td><td>전화번호</td><td>사무실</td><td>☎</td></tr>
<tr><td></td><td></td><td></td><td>C. P.</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 colspan="2">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사용목적 및 내용</td><td colspan="4">☐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td></tr>
<tr><td colspan="2">사용시간</td><td colspan="2">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td><td>참석예정
인 원 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사용시설 및 설비</td><td>기본시설</td><td colspan="3">☐ 대강당 ☐ 소강당</td></tr>
<tr><td>부속설비</td><td colspan="3">☐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프로젝터
☐ 기타 ( )</td></tr>
<tr><td>사용자설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 용 료</td><td colspan="4">금 (₩)</td></tr>
<tr><td colspan="2">허가조건</td><td colspan="4">1.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td></tr>
<tr><td colspan="6">「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당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td></tr>
</table>

[별지 8]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수 신 : 세무과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 ·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 · 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9]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10]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	납세자보호관
수 신 : 세무과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11]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당자	○○담당	세무과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내용				
의견 및 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장 (인)

[별지 12]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접수번호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 13]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접수번호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별지 14]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15]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2호 서식〕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			고충내용 요약	민원인			이첩·이송		처리결과		결재	
	일자	번호	구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일자	타 자치단체 등	일자	내용(요지)	담당자	보호관

[별지 16]

■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

연번	구분	성실납세자등			체납 및 징수유예 유무	지방세 납부액		선정일	포상일	비 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소재지)		(대표) 세목	세 액 (천원)			

[별지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원운동장사용(시설)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원운동장명				
사용시설물				
사용목적				
사용일시	200 년 월 일 : 부터 200 년 월 일 : 까지			
사용인원				
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하여 남동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
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
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은 제외)
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공원운동장사용(시설)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원운동장명				
사용시설물				
사용목적				
사용일시	200 년 월 일 : 부터 200 년 월 일 : 까지			
사용인원				
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1.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부대시설물 파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공원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하여 남동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한다.

4. 공원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 허가는 무효로 한다.

5. 신청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은 제외)

6.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한다.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조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간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담당부서의 장)

1.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3. 통지서 수령 유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공개·부분공개·비공개)	년 월 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년 월 일
4. 이의신청서의 취지 및 사유		
5. 담당부서의 답변내용및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1부

[별지 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효도카드 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3">(HP)</td></tr>
<tr><td colspan="5">「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남동구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장 귀하</td></tr>
<tr><td rowspan="2">첨부서류</td><td colspan="3">신청인 제출서류</td><td>수수료</td></tr>
<tr><td colspan="3">없음</td><td>없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대상자 명단

《 행정동명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명
2011-1					

[별지 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앞면) (단위:㎝)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동

5.5×7.5

0.3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동

0.3

4.9×7.5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별지 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1호 서식]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참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td><td>관리번호</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E-mail</td><td></td></tr>
<tr><td>멘토링 분야</td><td colspan="4">□ 경영전략 □ 기술/생산/품질 □ 마케팅
□ 인사/노무 □ 자금/재무 □ 기타</td></tr>
<tr><td>멘토링 상세분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경 력
(주요경력
위주)</td><td>회사명</td><td>재직기간</td><td>직위</td><td>담당업무</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자격증</td><td colspan="2">자격증명</td><td>취득일</td><td>취득기관</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활동비 입금
계좌번호
(추후기입)</td><td>은행명</td><td></td><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3"></td></tr>
</table>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창조경제 중소기업 멘토 참여를 신청하며, 위 기재한 개인정보를 멘토프로필 온라인등록, 활동비지급, 멘토링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필요시 신청자의 실무경력 또는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 명		멘토링 상세분야	
업무경력 기술 (상세하게)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별지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2호 서식〕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 단원 위촉 승낙(서약)서

☐ **멘 토 분 야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의 멘토서비스 단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지식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지도와 관련하여 위촉기간 내에 동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구에서 지급하는 활동비 외에 업체로부터 **추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4. 기술지도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기업이 단독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도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기술 및 품질향상과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6. 상기 내용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2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별지 3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별지 4호 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촉진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3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촉진에 관한 조례〔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 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촉진에 관한 조례〔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발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3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 락 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33]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상 호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1.담배가게( ) 2. 아파트 노인회( ) 3.기타(동추천장소) ( )			
※ 해당란에 O표하고 영업형태를 자세히 기재				
점포규모	㎡	소유현황	1.자가( ) 2. 임대( )	

【 약 도 】

위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판매소 위치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 정 번 호	
	소재지			
변경하고자하는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35]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 정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를 폐업·휴업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 년 월 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생 년 월 일	
	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⑩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9">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8"></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시설현황</td><td>소 재 지</td><td colspan="4"></td><td>관리주체</td><td colspan="3"></td></tr>
<tr><td>관 리 인</td><td colspan="5">(전화번호 :)</td><td>설치년도</td><td colspan="2"></td></tr>
<tr><td>규 모</td><td colspan="8">부 지 : ㎡, 화장실 면적 : ㎡</td></tr>
<tr><td rowspan="4">시설내역</td><td rowspan="2">시 설 내 역</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 유형</td></tr>
<tr><td>남자용</td><td>여자용</td><td>장애인용</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동양식</td><td>서양식</td></tr>
<tr><td rowspan="2">편 의 시 설</td><td rowspan="2">세면기</td><td rowspan="2">에어타올
(페이퍼타올)</td><td rowspan="2">환풍기</td><td colspan="2">화장지</td><td colspan="2">비누</td><td colspan="2">방향제</td></tr>
<tr><td>유</td><td>무</td><td>유</td><td>무</td><td>유</td><td>무</td></tr>
<tr><td colspan="2">1회 사용료</td><td colspan="8">원</td></tr>
</table>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관리사무소 연락처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용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임대주택명		관리사무소 연 락 처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2]

■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별지 제1호 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신	주 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청	노점장소(철거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장소)	
인	노 점 상 구 분	포장마차, 손수레, 보따리상	
	성 명	생년월일	
사	사 업 명		
업			
계			
획	사 업 계 획 및 소 요 사 업 비		
	융 자 희 망 액		
	사 업 효 과		

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 생계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43]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별지 7〕

(조례 제19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별지 44]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공인 □ 재등록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구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 표를, □재등록란에 v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23 조례

- 별지 44개 서식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남동구 직영+민간대행〕 형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삭제 (제23조)

- 15.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기금을 긴급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재정융자·예탁운용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타 기금 통합 운용 금지 조항 신설 (제3조제2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관기관의 위원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 교육장, 군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등으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나. 민간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불참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 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장은 민간기관·단체에서 축제·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민관협력위원회) ①실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임시가설물, 화재취약시설 안전성 여부,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현장 확인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협력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안건에 따라 관련 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축제의 개최 시 또는 협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력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된 사항 중 위원과 함께 현장 확인 시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하고 실무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타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령의 개정 및 구 조직개편 등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현실화(제2조)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축제 및 행사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제3조)

○ 위원회 위원의 포괄적 해촉요건을 구체화(제4조)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등을 명시(제8조)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19	19	
남동구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58, 260의 5호,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 2호, 580의1, 4, 5, 8호, 581-582 583의4호, 584-596, 688의2, 7, 16호, 689-896, 1124-1126,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201, 1127-1128번지(제외)
			구월2동	구월동 2-7, 20-26, 69-70, 341-342, 1251-1254번지 일원
			구월3동	구월동 산16, 산62, 산82-84, 179-180, 961의1호-969, 1034-1040, 1086-1123, 1342-1407번지 일원 201, 1127-1146번지, 1150-1176번지(추가)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호, 349, 551, 557-575, 580의6, 7호, 583의1호, 597-687, 688의1, 9호, 1255-1320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177, 178, 331-333, 340-343, 351-353, 358, 397-406, 410-459, 463, 466-467, 470, 472, 481, 484-490, 492-520, 523, 542-559, 730-734, 758, 산83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129-130, 133-146, 151, 153-160, 163-166, 182-197, 200-203, 205-210, 216, 217, 220-222, 228-241, 247-257, 267-271, 273, 275-277, 280-289, 295, 296, 298-313, 316-320, 326-328, 334-339, 344-348, 350, 구월동 71, 72번지 일원
			간석3동	간석동 1-10, 12, 20-24, 26, 28, 29-34, 37, 39-67, 69-115, 117-125, 167-175, 179, 180, 211, 212, 214, 224, 225, 227, 735, 736, 745, 746, 767, 산12, 산86번지 일원
			간석4동	간석동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 561-613, 616의82, 83, 84, 85, 86, 762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927-937, 948-983, 1005번지 일원 만수동 590의1호, 590의10호, 594의1호-594의20호, 808의42호,43호
			만수2동	만수동 산20, 1,2,4,5, 6-12, 41의1호, 32의8호, 35의8, 38의2호, 68, 71-76, 79, 80의1호-80의201호, 80의252호-80의486호, 80의500호-80의520호, 81, 83, 101-105, 107의21호, 867-874,1115-1번지 일원 3, 101-102, 1113번지(제외)
			만수3동	만수동 80, 107, 109-111, 116, 844, 850-855, 857-866, 산1, 산11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13, 17, 20, 29, 35, 46, 49-67, 84-90번지 일원 3, 101-102, 1113번지(추가)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289-291, 332-339, 600-810, 984-987, 1008-104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1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수산동(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38, 185-39, 185-40,185-42,191-4,192-2,193,194-1,597-37 제외), 남촌동 일원
	논현동	2	논현1동	논현동 1-66, 68, 109-112, 322, 549, 577, 591-605, 607-17, 651-69, 671-80, 산1-산30번지 일원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1-1외 19필지)
			논현2동	논현동 423, 427-30, 432-440, 442-451, 453-454, 473, 491, 505~507, 513, 543, 553-554, 559, 560-564, 580, 582-583, 585-586, 588-590, 618, 633-635, 643, 산75-78, 산80, 산84-86, 산94, 산105번지 일원
	논현동 고잔동		논현고잔동	논현동 179, 264, 269, 272, 359, 383, 409, 630, 650, 756, 970, 산13-산16, 산19-산20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일부 행정동의 경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되어 있어 대로를 기준으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별표)

○ 구월1동 일부지역을 구월3동으로 편입

○ 만수2동 일부지역을 만수4동으로 편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2. 관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

같은 조에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를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제19조의2제1항)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제31조제3항)

- 안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 감면가능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과.소”**를 **“단.과.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동년”**을 **“같은 해”**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실.단.과장은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단.과장이 제8조에 따른”**으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호의 1에”를 “호중 어느 하나에”로 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0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물품으로서”를 “물품으로써”로 하며,“호의 1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제3항 각 호”로, “20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대하여는 영 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해서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를 “감정평가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제31조에서 제3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 2. 24.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혁신전략추진단 신설 사항 반영(제2조,제8조,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인용 조문 정비

- 불용품 매각 관련 인용 조항 정비((제17조제4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보건사회관계			
(1)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 <변경>	1건	40,000원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 <변경>	1건	20,000원	
(5) 부속 의료기관(병원급) 개설허가 [신설]	1건	100,000원	
(6) 부속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 [신설]	1건	40,000원	
(7) 부속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신고 <변경>	1건	40,000원	
(8) 부속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 <변경>	1건	20,000원	
(9)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1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11)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12)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별표3]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료법 시행규칙」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삭제, 부속의료기관을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신설 (별표1)

현 행			개 정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의료기관(병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의료기관(병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허가	1건	40,000원
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신고	1건	2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부속의료기관(병원급)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부속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부속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	1건	40,000원
			부속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	1건	20,000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 정보공개 문서 수수료 기준 변경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문서·대장 등(전자파일 포함)열람 -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 100원	◦ 문서·도면 ·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도면·카드 등 (전자파일 포함) 열람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 100원	
◦ 전자파일(문서·대장·도면·카드 등)의 복제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단,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사진·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조례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포상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 수 확 인 (계장)	특별징수공적 (사유)	포상급 청 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주소	성명	**구분**	년도기분	과세번호	세 목	징 수 액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계장)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포상 금액	지급일	사유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포상금지급신청서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 속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3.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상금의 지급근거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조)

○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법령기준 부분 삭제(제7조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2,3호 서식)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 등)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차량지원 (제4조 제3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제9조제3항제2호 중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를 **“구”**로, **“공연”**을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제11조제2항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9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	1일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 1회 기준
스튜디오(소)	29.6	20,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문화교실1, 2	72.3	40,000	하나를 말한다.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구분			단위	기본 사용료	비고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샤 막		1일	100,000	
	덧 마 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 향 반 사 판		1일	50,000	
음향	음향콘솔 CD Player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0	
		소공연장	1일	2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	
		소공연장	1일	2,000	
	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10,000	
		소공연장	1일	10,000	
	무선마이크 배터리,스탠드포함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20,000	
	빔프로젝터	15,000Ansi(대)	1회	200,000	
		4,500Ansi(소)	1회	100,000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spot		1회	30,000	
	Moving Light		1일/1대	30,000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Strobe Light		1일/1대	3,000	
	Par 64		1일/1대	1,000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5%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 인천의 타 문예회관 수준으로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확대 (제9조)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및 전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남동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동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제1조 ~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 (제3조)

○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신고 기준을 정함 (제4조)

○ 현장 확인 및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 제6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정함 (제7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함 (제9조 ~ 제1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대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운영의 위탁 계약기간 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 (제1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를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징수관”을 “징수관, 재무관”으로, “기금운용관에게”를 “기금담당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영관에게 영수보고서”를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대불금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를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대지급금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 지급을”로,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 대지급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는”을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제1항 및 50% 감면 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재정법」,「의료급여법」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련조항을 재정비 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용어 정비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제3조, 부칙)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제5조, 제6조)

○「의료급여법」개정에 따른 대지급금 용어변경 및 결손처분 조항에 부당이득금 항목을 명시(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5.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대안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난 2014.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당연직 위원 ”을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 일몰제 적용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부위원장 호선과 임명에 관한 내용 신설 **(제9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 추가 **(제10조의2)**

○ 부칙에 기금의 존속기한 추가**(부칙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③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⑧ “보조금신청자”란 신청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공급시설 중 공급관과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급시설 설치비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하여 그 공사비의 일부를 세대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세대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범위 이내에서 균등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본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만 매년 12월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균등 지원의 경우에도 제4조제2항에 따라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단위 사업명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가구수(세대수)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남동구 로(동) 번길 공사종점 : 남동구 로(동) 번길			
배 관 연 장	m			
계좌번호(은행명)	(은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		총공사 길이	m	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주택취사용: 세대	
				주택난방용: 세대	
				그 밖의 세대: 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 과 내 역	부과금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투 자 비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총액 :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내역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내관 등 안전점검 이상유무 증빙서류 1부. 2.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내역(주소,성명,용도,등급 포함) 1부. 3. 수요가 연명부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타 당 성 조 사 서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보조사업의 목 적				
사 업 량	가 구 수 (세 대 수)	세대		
	공급배관	배관 : m(Ø m), 정압기 : 대		
사 업 비 : 총 원				
총사업비	000000(주) 투자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기타	
원	원	원	원	
타 당 성 조사결과				

년 월 일

000도시가스(주)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추정 내역(주소,성명,용도,등급 포함) 1부. 3. 수요가 연명부 1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2조)
○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제4～5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제6조)
○ 대상 선정 절차 및 지급 (제9～10조)
○ 감독 및 제재 (제11～1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③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⑧ “보조금신청자”란 신청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공급시설 중 공급관과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급시설 설치비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하여 그 공사비의 일부를 세대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세대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범위 이내에서 균등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본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만 매년 12월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균등 지원의 경우에도 제4조제2항에 따라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단위 사업명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가구수(세대수)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남동구 로(동) 번길 공사종점 : 남동구 로(동) 번길			
배 관 연 장	m			
계좌번호(은행명)	(은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		총공사 길이	m	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주택취사용: 세대	
				주택난방용: 세대	
				그 밖의 세대: 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 과 내 역	부과금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투 자 비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총액 :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내역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내관 등 안전점검 이상유무 증빙서류 1부. 2.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내역(주소,성명,용도,등급 포함) 1부. 3. 수요가 연명부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타 당 성 조 사 서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보조사업의 목 적				
사 업 량	가 구 수 (세 대 수)	세대		
	공급배관	배관 : m(Ø m), 정압기 : 대		
사 업 비 : 총 원				
총사업비	000000(주) 투자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기타	
원	원	원	원	
타 당 성 조사결과				

년 월 일

000도시가스(주)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추정 내역(주소,성명,용도,등급 포함) 1부. 3. 수요가 연명부 1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2조)
○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제4～5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제6조)
○ 대상 선정 절차 및 지급 (제9～10조)
○ 감독 및 제재 (제11～1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 업체가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대행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60점 이하의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업체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6조 제3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분야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년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3(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68조제1항”을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과태료”를 “구청장이 과태료”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무단투기에”를 “구청장은 무단투기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2. 제25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준수
3. 제26조 제1항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접수
4. 제27조 제1항의 과태료부과의 처분·통지
5. 제28조 제1항의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접수
6.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의 관할법원 통보
7. 제3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의 기록 관리
8. 제31조의 제1항의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대행업체의 대행 분야 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 지도·감독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모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과 주민의 자율 참여를 높이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사업소와 동에 위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3)

○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삭제(제21조)

○ 사업소와 동에서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의 관련업무와 무단투기단속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위임(제3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비(제3조 제4호 및 제8호, 제7조제3항)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법 제20조2를 법 제10조3), 재원의 조성에 관한 위임 사항이 없는 불분명한 조항 삭제
-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자격 조건 개정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 추가 (제9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벽보의 표시방법)
지정벽보게시판에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한 게시판에 2면을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제22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 ”동장 등 “이라 한다.)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4항 중 “구청장은”을 “동장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자가”를 “주민 등이” 로 “구청장에게”를 “동장 등에게”로 “구청장은”을 “동장 등은”으로 한다

별표3, 별표9,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6㎡이상)	1면	1,000원	
	소형(6㎡미만)	1면	5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	1면	300원	
벽 보·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A4용지 초과	300매	3,000원	
	A4용지 이하	300매	2,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된)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 (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의함
   나. 접 수 처 : 남동구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각동 주민센터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9]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10일 / 8,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	1개월 / 150,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	1개월 / 100,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 1면당)	15일 / 1,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개 소당)	1개월 / 20,000	부가세 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 복사용지 75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별지 제13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① 성 명</td><td></td><td>② 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③ 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④ 도로명 주소</td><td colspan="4">인천광역시 남동구</td></tr>
<tr><td rowspan="7">신청 내역</td><td colspan="2">광고물 종류별</td><td>지원비</td><td>⑤수량 및 면적 (㎡)</td><td>⑥신청금액 (원)</td><td>비 고 (지원내역)</td></tr>
<tr><td rowspan="3">현수막</td><td>대형(5㎡이상)</td><td>1,000원</td><td></td><td></td><td>1면 기준</td></tr>
<tr><td>소형(5㎡미만)</td><td>500원</td><td></td><td></td><td>1면 기준</td></tr>
<tr><td>족자,깃발형 현수막</td><td>300원</td><td></td><td></td><td>1면 기준</td></tr>
<tr><td rowspan="2">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td><td>A4용지초과</td><td>3,000원</td><td></td><td></td><td>300매 기준</td></tr>
<tr><td>A4용지이하</td><td>2,000원</td><td></td><td></td><td>300매 기준</td></tr>
<tr><td colspan="2">주 요 수 거 장 소</td><td colspan="4"></td></tr>
<tr><td>신청계좌</td><td>⑦ 예금주</td><td></td><td colspan="2">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신청내역 확 인</td><td colspan="2">광고물 종류별</td><td>⑨수량 및 면적(㎡)</td><td>⑩지급예정액 (원)</td><td colspan="2">⑪ 담 당 자</td></tr>
<tr><td rowspan="3">현수막</td><td>대형(5㎡이상)</td><td></td><td></td><td colspan="2" rowspan="5">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td></tr>
<tr><td>소형(5㎡미만)</td><td></td><td></td></tr>
<tr><td>족자,깃발형 현수막</td><td></td><td></td></tr>
<tr><td rowspan="2">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td><td>A4용지초과</td><td></td><td></td></tr>
<tr><td>A4용지이하</td><td></td><td></td></tr>
</table>

※ 지급결정내역(⑨-⑩)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5항[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 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7항[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	
교육계획	일 시	
	장 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정벽보게시판의 게시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액 폐지 및 사업소와 동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정벽보게시판의 게시기간 규정 신설(제20조의2)

○ 사업소와 동으로 보상금 지급 주체 변경(제22조제1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상한 폐지(제22조제3항)

○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자 변경(제22조제5항)

○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공공게시대 게시기간 추가 (별표3, 별표9)

○ 별지 서식 조례 조문 인용 오류 정비(별지 제3,4,6,8,9,13,16,18, 19,20호 서식)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10원미만은”을 “10원단위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00원 이하 단수는”을 “10원 단위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증명발급”을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등)”으로,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을 “검사항목은 관계법령 등”으로, “한하여 실시한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를 “산정하여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특별진단서(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는 결핵검사(흉부직촬)료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을 “진료의뢰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진단서”를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 면허용진단서, 감염병진단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제7호 중 “광주민주화유공자와 유족”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하고, 단서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7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그 밖의 진료수가

(단위 : 원)

항 목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치석제거술	전체치아	30,000	※ 아이모아카드 발급자에 대한 치과치료비 감면 - 치석제거술 : 20% 감면 - 치면열구전색 : 100% 감면 - 불소도포 : 100% 감면
치면열구전색	1치아 당	5,000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1회	5,000	
유료예방접종	1회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한다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본 교부 수수료	1매	2,000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간석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수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 · 용어를 변경하고, 그 외 특별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신설, 의료수가 조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변경 등(제3조, 제7조, 제8조)

○ 방사선 영상 CD사본 교부,진단서 및 특별진단서(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근거마련, 신설 및 유료 예방접종에 대한 세부내용 명시 (제7조, 별표1)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2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11월 25일”을 “11월 20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에 개회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2014년 5월 28일, 부칙 제3조(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으로 2015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으로써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의결이 필요하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 (제3조제1항제2호)**

-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0일로**

○ **특별위원장 선임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변경 (제11조제2항)**

- 당초 연장자 ⇒ **최다선 의원으로**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8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다수인”을 “2인 이상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으로, “법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6조 중 “저촉”을 “불일치”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및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이 일문일답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시간 48시간 전 (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해당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⑦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언동”을 “말과 행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7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를 “교육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8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기한 신설 (제19조제2항)
-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의정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목변경 (제33조2)

○ 구정질문 조항 신설 (제66조2)
- 질문방식 : 일괄질문 ·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
-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 시간 : 구정질문 시간 48시간전 (휴무·공휴일은 제외)까지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 기타 → 그 밖의 , 자 → 사람 등

훈 령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7월 31일

남동구 훈령 제31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법예고 5 공청회 개최계획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사무 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9, 별지 10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훈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 소 속 :

○ 직 급(직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경 력

기 간	근 무 경 력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기 간	여 행 목 적 (여행국)

신원 특이사항 확인(있음, 없음)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 . .

작 성 자 (인)

행정계장 (인)

[별지 2]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 (입법예고 5. 공청회 개최계획)

조례 제(개)정 · 폐지안 입법예고

5.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계획 |
| 없음 이라 기재한다.) |
|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 나. 장 소 : (가급적 시소유 시설물을 사용) |
| 다. 공청사항 |
| (1) ---------- |
| (2) ---------- |
| 라. 발언지수 : ○○○인 |
|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
|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 |
| 면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
| 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
|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
|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시청하는 경 |
| 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별지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제7조제3항 관련)

1. 피고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무처 :

2. 고발취지

3. 고발내용

4. 증 거 물

년 월 일

고 발 인 (인)

○○○○ 귀하

[별지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사무 처리 요령〔별지 제4호 서식〕

범죄 발생 통보서

(제2호가목(1) 관련)

1. 행 위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2. 범행사실	사건명			
	내용			
3. 관계기관의 조 치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상황			
4. 기타	참고자료			

※ 작성요령

1. 2명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범행 당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그 당시 사항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취급자 관리대장(제11조 관련)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취급일	취급구분	취급자료	비고

※ 1. 취급일 란에는 취급을 시작한 연월일 기재
2. 취급구분 란에는 비공개, 공개제한 등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취급 해제 연월일 기재

[별지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지 제4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이동전화)	 ( )	⑤ 전자우편	
⑥ 공간정보의 종류		⑦ 신청지역	
⑧ 사용용도		⑨ 제공방법과 수량	- 종이출력 ( ) 축척 : 매수 : 축척 : 매수 : - 전산매체 ( )
⑩ 비고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의 종류 : 도시기반시설물도, 수치지도

⑦ 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 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 제 공 방 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별지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지 제5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table>
<tr><td rowspan="3">요 청 자
신원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소속직책</td><td colspan="5"></td></tr>
<tr><td>요청자료</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
활용계획</td><td colspan="3"></td><td rowspan="2">타 당 성</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검 토 자</td><td></td></tr>
<tr><td rowspan="4">요청자료</td><td>보안대책</td><td colspan="5"></td></tr>
<tr><td>제공자료</td><td colspan="5"></td></tr>
<tr><td>제공방법</td><td colspan="5"></td></tr>
<tr><td>제공일시</td><td colspan="5"></td></tr>
</table>

년 월 일

분임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지 제6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3조제2항 관련)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신원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소속기관(단체)</td><td colspan="2"></td><td>직책</td><td colspan="2"></td></tr>
<tr><td>요청자료</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
및
활용계획</td><td colspan="6"></td></tr>
<tr><td>관리대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제 공
내 역</td><td>제공자료</td><td colspan="5"></td></tr>
<tr><td>제공방법</td><td colspan="5"></td></tr>
<tr><td>제공기간</td><td>~</td><td>반납여부</td><td></td><td>반납일</td><td></td></tr>
<tr><td>보안대책</td><td colspan="5"></td></tr>
</table>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즉시 환수 및 사용 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별지 9]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별지 제4호 서식〕

표 창 추 천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 천 훈 격		추천순위	

추 천 사 유
1. 2. 3. 4. 5. ※ 첨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군 번 (군인의 경우)								
본적(국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 급 (직급, 계급)							근무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공 적 분 야 코 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표창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6개 훈령

- 별지 10개 서식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3년간 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됨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의 기능,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안 제3조)**

○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상위법령 반영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1, FAX 453-27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3년간 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됨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기능,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안 제3조)
○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상위법령 반영함(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신·구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택법」 제42조, 제52조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내지 제5의2호에서 정한 사항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3호부터 제5호”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각각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5항”을 “「주택법」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주사가 되며”를 “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로,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7조에 따라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내지 제5의2호에서 정한 사항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 내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한다) 소속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제2항 ----------.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각각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⑤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종료시 자동해촉된다.
제4조(회의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4조(회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위원회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제척)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주택법」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주택법」제42조제8항** ---------- ---------- ---------- ----------. ---------- ---------- ---------- ---------- ---------- ----------**해당**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	② **제1항에 따른** ---------- ---------- ---------- ----------

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해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9조(조정의 효력)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당사자 등은 그 통보를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효력)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인정	제10조(종결 등) ① ------**해당** ----------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 ---------- --.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 ---------- ---------- ------.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 ---------- ---------- ---------- 작성한다.

【참고자료】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3년간 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됨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운영(안 제3조)**

○ **조정위원회의 기능 상위법령 반영 (안 제4조)**

○ **회의 개최 알림 방법 및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1, FAX 453-27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3년간 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운영(안 제3조)
○ 조정위원회의 기능 상위법령 반영 (안 제4조)
○ 회의 개최 알림 방법 및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구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임대주택법」제28조 ~ 제30조, 제33조 ~ 제35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31조 ~ 제3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각각 1명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각각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2. 임대사업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34조 각호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고시"를 "부득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일"을 "2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임대주택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간사는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기한 때"를 "제기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임대주택법」제33조에 따라 ----------. ----------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②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구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각각 1명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

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제2항의 제1호·제2호·제4호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고,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각각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2. 임대사업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다음 각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34조 각호 및 「임대주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사항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 4.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자보수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사항	택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③ 위원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2일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등) ① (생 략)	제6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간사는 임대주택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생 략)	제7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 ---------- ---------- ---------- ----------.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 ---------- ---------- ----------해당 ---- ----------. -------- ----------

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기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1조(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 신청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1조(종결 등) ----------해당 ----------.

【참고자료】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5.18.>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5.18.>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시행일 : 2015.9.19.] 제28조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해당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등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 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00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7. 28. ~ 2015. 8. 28.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성 명	이해관계인 동의
장수동 28-1번지	2,218	4	6	김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남동소래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운영 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

○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32 남동소래아트홀 / ☎ 453-5180, FAX 453-5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소래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운영 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

○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 각 호의 할인율이 두 가지 이상 적용이 가능한 관람자에 대하여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해서----------.
제20조(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205호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15년 1월 1일

○ 결정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대 상 [단위: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조정지가	비 고
1	간석동 598-3	1,375,000	1,323,000	
2	만수동 583	188,000	200,000	
3	운연동 144-1	153,300	168,600	
4	남촌동 76-1	198,200	200,400	
5	남촌동 89-2	351,500	354,800	
6	남촌동 122-2	215,000	219,000	
7	남촌동 160-1	182,900	201,000	
8	남촌동 199-2	184,600	327,600	
9	도림동 600-4	162,600	225,600	
10	도림동 600-5	184,600	252,800	
11	도림동 600-6	162,600	225,600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07호

2015년 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14(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년 7월 정기분)
대 상 자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번길 **-*(송림동) 구*우 등 841명(명단별첨)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같은법 제160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문 의 처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453-2890)

3.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2015년 8월 31일까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5%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최고60개월) 그 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으며,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관계부처 비치 및 홈페이지 참조)

진행현황	고지번호	단속차번	납부자명	변환발송주소	공고일자	간주납기	비고	잔액금액	납부자구분
송 달	288125201506200100083	34구5711	구*우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번길 **-* (송림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01	84고7148	(주)남인천환경위생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 (구월동)	2015.07.30	2015.08.31		5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04	35모8077	이*익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길 **-**(사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06	90고6219	(주)엘림이엔씨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삼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07	12소6119	최*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동원베네스트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09	27두5311	백*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0	27루2156	이*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3	34모7392	성*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4	53모3749	김*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동 ***호 (부개동, 신명보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7	67어6098	(주)정수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남빌딩 *층(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8	48러3481	이*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 (만수동, 금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19	19러6247	김*수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호 (주안동, 경동쉐르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24	45라1373	이*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25	15모5510	소*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 (간석동, 수피아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26	38루6282	전*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상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31	12주3137	이*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골길 ** (사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32	13고6930	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35	17주5186	주식회사 유퍼스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광진빌딩 *층(역삼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36	18라3726	김*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 A동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2	26거1938	김*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번길 ** ***호 (주안동, 펠리스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3	26구2273	이*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번길 *-** ***호 (신창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4	26조1764	전*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5	27오3861	박*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동 ****호 (부평동, 스위트홈)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6	31러5484	전*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7	31서5219	배*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48	32머9336	문*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 **-*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050	39다5450	공*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번길 ** *동 ***호 (서창동, 행복드림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	39소1059	강*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번길 * ***호 (유성빌라*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3	42머8945	고*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4	42서8758	조*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 (구월동, 아이원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5	45나7649	박*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B**호 (구월동, 성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6	46부9721	라*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7	46우6633	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49부7487	조*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	60루9546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7	60주8280	장*순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 *층호 (도원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61더9838	윤*식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67거1641	A*DYKADYRO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번길 **, ***호 (주안동, 남송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	73두4414	김*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9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	76수3575	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길 **-* (보문동*가)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7	85서1966	김*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가길 * (화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88너9174	(주)투게더로지스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번길 *-*, ***호(여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96노5457	구*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B**호 (만수동, 만수아트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6	인천32러5566	안*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나동 ***호 (가좌동, 신영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8	86보3214	이*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번길 ** *층호 (심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91	26조8364	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동 ***호(구월동, 모래내그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92	31오8745	임*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남촌동, 세일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96	54다8577	강*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다동 ***호 (만수동, 현대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97	54주5930	안*남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번길 ** (석남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99	61누9765	윤*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 (구월동, 이안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	73수4359	장*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십정동)	2015.07.30	2015.08.31		9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3	86보3213	하*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번길 ** 가동 ***호 (만수동, 금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5	12다4803	김*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호 (부평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28거9851	조*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번길 *-** (임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8	38마3128	이*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번길 ** A동 ***호 (역곡동, 제아아너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2	66구7418	차*임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 ** (중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1 3	73우8214	김*준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B동 ***호 (주안동, 쌍용파크빌)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1 4	80거9816	신*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번길 ** ***동 ***호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1 9	인천84바9839	이*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층 (간석동)	2015.07.30	2015.08.31		9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2 1	21보9742	최*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2 8	68서2583	박*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도림동, 도림주공그린빌*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2 9	인천35너3564	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 ***동 ***호 (간석동, 노블레스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3 0	05다7580	윤*근	부산광역시 남구 용주로**번길 ** (용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3 2	08무5340	성*순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 ***동 ****호 (중산동, 하늘도시 우미린*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3 3	20호2688	노*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동 ***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3 4	22루8486	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 (구월동, 가람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3 9	45소7147	이*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 ***호 (송월동*가, 태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4 0	89소5756	유*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 *호 (방이동, *층)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4 1	인천81마5412	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번길 ** ***호 (서창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4 3	인천30루2625	김*민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 비동 ***호 (주안동, 대성빌리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4 6	12서8767	최*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4 9	69보1211	김*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 ***호(논현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3	45루5473	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다길 **-** 가호 (화곡동, 지층)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4	90루6328	신*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B동 ***호 (간석동, 라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5	인천34머2375	박*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호 (구월동, 센트럴씨티)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6	27노6428	김*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번길 *-* *층 *동 ***호 (작전동, 궁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8	42너7736	이*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길 ** (신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5 9	63러1556	이*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길 ** ***동 ***호 (와동, 보륭연립*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6 0	25고3606	주식회사 아리솔건설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층(공릉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6 5	인천31다3470	김*환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 *동 ***호 (관교동, 쌍용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7 2	16오2049	신*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 *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7 3	19모2661	최*민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7 4	20부3312	서*옥,홍성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 *층호(남촌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75	42오3403	김*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77	33모8402	김*석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 ***동 ***호 (대야동, 청구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79	19로8226	백*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번길 ** ***호 (송내동, 다니엘홈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81	인천32다4831	정*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번길 ** *층호 (옥련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86	22루3390	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길 ** ***호 (화곡동, 대흥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88	32머2881	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번길 ** ***동 ****호 (삼산동, 삼산*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89	39부3639	박*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마구실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90	40버3561	정*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고락로**번길 * (지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94	66구5954	홍*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C동 ***호 (가좌동, 유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96	68라9950	김*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번길 ** , *층(우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199	93모8505	김*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0	인천33도7029	허*식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1	01버6499	하*복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호 (주안동, 승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2	02러7992	노*환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C동 B**호 (용현동, 동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3	06더9229	고*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5	16머8454	이*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야길 ** , 나동 ***호(진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6	16소7217	황*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번길 **-** *층호 (부개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7	18라3739	고*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8	20라5018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09	33보9849	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 A동 ****호(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0	34보6427	이*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 (사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3	41누7072	김*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 ***동 ***호 (부평동, 네오리치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4	41루8440	(주)오피스굿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 ***(부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5	49보6342	함*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6	50라5325	이*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18	58버5057	박*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 ***동 ***호 (합정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20	80우1284	(주) 원터상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가길 **, *층(상계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21	85어6521	박*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222	05우7213	이*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 (연수동, 솔밭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3	14부6306	김*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호 (석남동, 미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4	30가7839	윤*미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 ***동 ***호 (송림동, 송림휴먼시아 *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5	36나8823	조*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길 **-** (선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6	39보4733	윤*국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 나동 ***호 (주안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7	50허9333	원오토렌트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석촌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8	76가5705	이*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길 ** (사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29	92나2445	김*화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0	11보9166	이*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호 (만수동, 성주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1	23가8950	이*준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번길 * ***호 (숭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2	46수7868	백*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C동 ***호 (만수동, 예원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3	64누5334	한*효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번길 ** ***호 (신천동, 우명프라자)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5	인천32다4303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가동 ***호 (만수동, 영화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6	15누1709	김*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번길 ***-* *층호 (평촌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39	26수5459	최*철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 (주안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41	36마1389	이*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번길 *-** *층동 ***호 (영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43	57주8785	홍*정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번길 **-** *동 B**호 (문학동, 신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49	15저9509	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0	19주2989	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1	42모3219	탁*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3	54호6054	한결상사	인천광역시남동구 은봉로***번길 ** ***-*** (논현동,논현휴먼시아*단지범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5	69수7571	문*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6	28버3727	손*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길 ** (북아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7	59오5316	최*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58	14무8213	스누스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 *** (여의도동,대영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61	19머2500	대복레저개발(주)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번지 *호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63	37누7884	이*경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 (학익동, 하나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64	55모9169	유*환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번길 *-* ***동 ***호 (도화동, 세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65	20나8414	이*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 (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68	15누1709	김*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번길 ***-* *층호 (평촌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0	55서9875	박*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동 B**호 (십정동, 동방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3	50두6778	조*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길 ** ***호 (동양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4	64버7281	정*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호 (등촌동, 우림보보카운티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5	42우4879	최*화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7	64도9454	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78	19허1456	(주)케이디에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0	86노6117	(주) 금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학익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1	48버2897	김*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2	66우5634	유*호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 **동 ***호 (도화동, 실버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3	06보1095	이*은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호 (주안동, 예하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4	75서6358	박*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번길 **(소사본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5	56우9525	서*영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번길 *** (운북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8	05하3761	제니스(배윤미)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번길 ** *층 (숭의동)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89	46누7208	(주)하이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논현동, 금아프라자***호)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90	12러5572	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92	16로2552	공*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나동 ***호(만수동, 백영연립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95	울산99바8247	흥국운수(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	2015.07.30	2015.08.31		5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97	08무5340	성*순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 ***동 ****호 (중산동, 하늘도시 우미린*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299	50고6020	(주)경림목재상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남동공단***블럭*롯트(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0	06마3401	박*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 ***동 ***호 (불로동, 불로e-편한세상)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1	15저9617	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번길 ** (산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3	52주7390	이*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번길 **-* (내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7	경기80나9465	차*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번길 ** *동 ***호 (약대동, 월드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8	인천32더7245	정*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 ***호(간석동, 청후샬레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09	02더8348	김*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 (구월동, 장수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0	18주2085	박*옥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번길 ** (산북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1	19구6376	송*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 , ***동 ***호(옥련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2	19두1372	이*엽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호 (작전동, 유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4	43모4905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호 (가좌동, 동서베스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6	73우7903	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우목안길 * (선부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17	91러9460	임*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호 (부평동, M타워 *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21	31소7187	김*미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 ***동 ***호 (관교동, 삼환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23	52소2902	임*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24	56머7737	고*성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 ***동 ***호 (도화동, 대진성웅산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29	89다7588	정*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 ***동 ****호 (삼봉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33	인천80거9868	윤*선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석남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34	01주3363	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번길 * ***호 (임학동, 해마루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40	40어9246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41	45가8216	조*행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주공뜨란채아파트 ***동 ***호(**통*반)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44	68로6377	박*훈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 (주안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45	68마9783	김*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동춘동, 동남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48	96머2634	박*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 ***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1	34어4473	김*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번길 ** , ***호(부평동, 희망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3	52모9077	임*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동 ***호 (경서동, 지원드림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4	56나3386	민*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번길 ** *동 ****호 (작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5	89너8552	조*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동 ****호 (부평동, 부평현대더로프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6	97머8016	박*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8	02허4295	(주)제이에이치페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 (건산리)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59	75보9720	나*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C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더타워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2	66우5290	최*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 (연희동, 웰카운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4	43저1360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 (논현동, 단풍마을 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6	87보6463	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7	30오101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호 (도림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8	09루8257	이*직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한국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69	40가9834	김*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층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70	76버9228	이*국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B**호 (석남동, 제왕빌라)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71	65저5209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72	86오8462	신*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 (연수동, 연수*차우성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373	14어7442	성*기	인천광역시 남구 송림로 *** ***동 ****호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76	59서7381	송*호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번길 *, ***호(숭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0	66구5954	홍*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C동 ***호 (가좌동, 유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1	71부6881	장*영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용현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2	11머1570	오*자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3	39어1695	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4	56너1847	신*화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동 ***호 (주안동, 진흥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6	22나1098	이*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가길 **-* ***호 (화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88	20어2134	백*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가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91	85보7511	정*화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동 ****호 (항동*가, 비취맨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94	74소2982	도*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 ***동 ***호(장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95	19노7347	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96	26주6736	김*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남길***번길 ** ***호 (용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397	41두2113	이*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번길 ** *동 ***호 (옥련동, 벽산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00	06나7074	박*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번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03	63부6113	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B**호 (만수동, 정암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05	15저9712	이*숙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번길 ** ***동 ***호 (서운동, 해들목 휴먼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06	46너8988	김*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번길 * *층호 (고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14	26누1810	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 ***동 ***호 (십정동, 동보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16	43노2752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17	51부5140	유*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길 ** B동 ***호 (호계동, 경남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21	19우5209	오*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로 ***-** , ****동 ***호(마송휴먼시아 매수리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22	09구3970	한*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번길 ** ***동 ***호 (김포양촌금빛마을자연앤데시앙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24	24나6675	김*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도시개발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25	26너8445	조*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동 ***호 (옥련동, 풍림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27	55우7698	(주)이지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 **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0	14수5877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호 (행신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1	19서1978	최*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번길 * *동 ***호 (도림동, 천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3	04루6043	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호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4	86서7836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5	인천34나1997	송*규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 8	59수4105	고*선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번길 ** *동 ***호 (문학동, 주영탑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3 9	97라7792	안*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호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4 0	39우1892	마*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호 (장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4 1	67어6098	(주)정수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남빌딩 *층(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44 3	37가2332	김*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4 5	30구8080	김*혁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마길 * 지층 ***호 (신대방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4 8	61머1859	이*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0	11라5772	(주) 요한큐엠소프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호(가좌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1	24허7825	김*상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김정문화로 ** ***동 ***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2	26너3837	서*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선학동, 뉴서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3	인천32마1628	손*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번길 ** B동 B**호 (만수동, 태우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4	37마1277	이*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동 ***호 (연희동, 청라린스트라우스)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5 9	66러2351	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남촌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0	54서5571	이*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번길 *-** ***호 (은행동, 고려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1	13다7728	박*홍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 *** *동 B**호 (문학동, 우성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3	69버9755	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5	55저8685	임*순외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번길 **-* ***호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6	60두2922	엄*걸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 ***동 ****호 (만석동,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8	05러6536	용*승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번길 * ***호 (정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6 9	48로9620	최*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 *동 ***호 (신흥동*가, 삼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0	22버4904	이*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길 **-** (두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2	48조1001	윤*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 (구월동, 태정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3	50더9788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4	54허2013	이*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 (부평동, 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5	03버7658	김*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 ***동 ***호 (상현동, 만현마을*단지아이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6	08허2743	전*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번길 ** ***호 (초읍동, 대경에코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7	17우9057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동 ***호 (석남동, 한빛아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7 8	20모8634	유*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동 ***호 (가좌동, 합동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82	51수4412	홍*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번길 **-* ***호 (전민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83	73고6651	송*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A동 ***호(구월동, 솔로타운)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84	91다9052	성*희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번길 **-* *동 ***호 (신천동, 균정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85	10나7085	이*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나동 ***호 (구월동, 금영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86	19보4526	이*희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 *동 ****호 (주안동, 쌍용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0	54호5870	전*신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번길 **-* (관교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1	인천33로7836	정*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2	05하4646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3	06로1606	라*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서울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5	29고3763	박*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번길 ** ***동 ***호 (법동, 한마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499	48저9592	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00	55마9356	구*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 (부평동, 부흥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02	86어8733	최*창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번길 *-** (도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05	경기06모7173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06	서울06타7605	박*수(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 ***호 (연수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0	89노2536	(주)태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로**번안길 *, *층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2	21로5685	이*랑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호 (간석동, 대성빌리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3	61너1289	강*용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길 ** ***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4	73수2092	박*영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번길 ** 나동 B**호 (주안동, 우신빌라)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5	인천32거2279	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 ***동 ****호 (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6	인천34러4098	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APT)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7	51버7318	심*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다길 ** (독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19	73수2092	박*영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번길 ** 나동 B**호 (주안동, 우신빌라)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24	60머9427	구*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번길 **-** 나동 ***호 (옥련동, 양지아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27	56로8051	박*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 (월피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30	22호6239	피에스그제이글로벌	서울특별시종로구 지봉로**길 **,** (창신동,시즌빌딩*층)	2015.07.30	2015.08.31		8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531	37더6869	장*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번길 ** ***동 ***호 (작전동, 한일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32	45가8713	공*식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번길 **-* *동 ***호 (도창동, 에이플러스타운)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33	52노2817	김*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 (만수동, 구대동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35	05러6536	용*승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번길 * ***호 (정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36	20수5882	김*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번길 ** ****호 (심곡동, 삼융아파트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38	32주6420	(주)금수기공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39	34소7059	(주)하이특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번길 **, ***호(청천동, 경일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45	45소7147	이*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 ***호 (송월동*가, 태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46	48거5614	안*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번길 ** ***호 (숭의동, 두언파크맨션)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47	48무2361	황*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 (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49	54러6213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0	인천35거2368	이*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성지리벨루스APT)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1	17서6391	장*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동 ****호 (경서동, 청라LH)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2	68소5032	김*선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지하동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3	41조8576	최*영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가길 ** (산림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5	56마8284	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6	인천06바7692	조*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 (남촌동, 삼호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7	67나7267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 ** C동 ***호 (십정동, 삼정연립)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8	19러1553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 (만수동, 삼보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59	25구1165	이*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간석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0	41누7072	김*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 ***동 ***호 (부평동, 네오리치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1	51저6192	김*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3	60주1384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신대동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4	61누9765	윤*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 (구월동, 이안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5	62나8242	권*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다길 ** ***호 (화곡동, 대창아이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6	75루6240	전*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8	인천31로3269	황*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 ***호 (십정동, 약산신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69	인천86가6198	(주)남인천환경위생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 (구월동)	2015.07.30	2015.08.31		5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70	27누6873	고*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72	41루8440	(주)오피스굿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 ***(부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573	42다3825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B**호 (간석동, 삼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7 4	45조3840	천*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동 ***호 (만수동, 동남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7 6	68고9631	이*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번길 * ***호 (구월동, 원실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7 7	경기06모7173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7 9	13고5041	박*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 ***동 ***호 (대화동, 대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8 0	15버9167	S*I HESON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번길 **-*, (고등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8 1	17수6901	이*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수유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8 2	19버4945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호 (만수동, 청송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8 3	22오4852	태양산업(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길 **(상서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8 7	42두3898	김*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안로**번길 ** ***호 (청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0	66두8558	염*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 (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1	67누9463	박*수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 나동 ***호 (석남동, 무송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2	69더9936	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5	74모8134	최*규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 ***동 ****호 (월곶동, 월곶풍림*차아이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6	81로2878	황*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번길 * *동 ***호 (고강동, 삼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59 7	85어2501	이*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길 **-* (신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0	92러7813	(주)지와이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논현동, 토성프라자 ***호~***호)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3	23오8866	김*레이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4	45나7649	박*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B**호 (구월동, 성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5	75모4769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 (구월동, 현광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6	86서8303	송*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7	13머6856	최*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번길 * ***호 (삼정동, 아트리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0 8	19라6801	박*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동 ***호 (구월동, 삼성마이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0	23마7872	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1	42도1832	장*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2	55다3456	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3	81고8921	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C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더타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 4	16저9716	한*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5	42어4624	윤*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번길 ** *층동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6	29두5822	이*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 *호 (옥련동, 동신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19	59루6003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호 (화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0	서울55고1543	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3	61너2513	손*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동춘동, 동춘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4	26구5445	김*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 ***호 (정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5	30너4400	정*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번길 **-* *층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7	50두6778	조*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길 ** ***호 (동양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29	69보1623	신*민	인천광역시 남구 용삼길**번길 ** (숭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30	59오5067	김*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동 ****호 (항동*가, 비취맨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31	16서9065	한*숙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번길 ** ***동 ****호 (금광포란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34	32더1317	(주)엠에스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B**L *층 *호(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2	57허6680	미래정공	인천 남구 주안동 *-**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3	60두2922	엄*걸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 ***동 ****호 (만석동,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4	86도7488	서*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번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7	40저9133	원*호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번길 ** ***호 (남북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8	04로2406	(주)성신데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길 *(신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49	19나2857	이*무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53	35부2769	배*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C동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55	53어3211	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B동 ***호(서창동, 영종하이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59	34모7203	박*복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 **-** ***동 ****호 (학익동, 정광산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2	59오5580	이*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 (간석동, 동남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3	65수9717	배*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마길 ** (공항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4	68마2420	박*묵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6	93버4225	이*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B동 ***호 (구월동, 삼보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7	인천72라2044	권*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 ***호 (부개동, 부림빌라)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69	19두1372	이*엽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호 (작전동, 유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76	06고1202	김*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78	17수6901	이*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수유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79	18나5686	김*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층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0	21로5994	박*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l	26서1062	양*욱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번길 *-* B동 ***호 (십정동, 한양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2	27로1153	배*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번길 *-** , ***호(세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4	45가8713	공*식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번길 **-* *동 ***호 (도창동, 에이플러스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6	56도6989	김*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 ***동 ***호 (주안동, LOTO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7	58더9752	J*N FENGHU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간석마을 풍림아이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8	66루1130	송*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 **동 ***호 (송현동, 송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8 9	67라2185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번길 *-* A동 ***호 (부평동, 영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0	69버5545	김*옥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 ***동 ***호 (용현동, 한양용현*차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1	81부9797	이*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번길 *-* (만수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4	89모6827	이*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층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5	인천32너5549	한*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나동 ***호 (만수동, 현광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6	인천33구1305	(주)비앤비윈도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7	전북29노1213	정*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 (간석동, 웰스하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69 8	02고6954	L* CHUNZHI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0	25다1852	주식회사 피플앤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층 ***호(간석동, 국제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1	29노4393	윤*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 (만수동, 삼환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2	30나3633	임*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3	31구1032	이*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4	50우6388	정*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번길 **-* ***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7	80주1294	박*나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 ***동 ****호 (경서동, 청라반도유보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8	95어7761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0 9	경기89사3692	문*구	경기도 시흥시 목감초등길 * ***동 ***호 (조남동, 삼호가든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1	인천34노1966	김*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 , B**호(석남동, 계성하이츠)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2	01호5492	윤*영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번길 ** ***호 (궐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3	07다1362	안*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6	20수5867	박*숙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서로**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8	23마7256	정*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1 9	37저6249	이*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번길 * ***동 ****호 (송도동, 풍림아이원APT)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21	54버6976	박*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23	58모6449	원*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동원베네스트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25	68노3362	이*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 ***호 (와동, 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26	69어3971	윤*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반포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29	인천32바2206	장*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30	63오7645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번길 ** ***동 ****호 (옥련동, 아주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32	23고7453	오*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망원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34	48머3217	심*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층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37	81라2292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0	59마8071	신*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1	23보1978	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 ***호 (부평동, 헤리움노블레스)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2	12보8019	조*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호 (가락동, 가락한신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5	34누9233	박*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번길 **-* A동 ***호 (송내동, 이룸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7	01조9973	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A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더타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8	86어8751	김*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가동 ***호 (주안동, 아주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49	22저4782	홍*화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번길 ** *동 ***호 (가좌동, 라이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0	46두9247	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3	67보5501	정*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대로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4	53버4087	김*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번길 ** (권선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5	62서8809	김*화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번길 ** ***호 (숭의동, 온누리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6	32보9448	김*익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번길 **-* *층 (의정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8	37어7760	박*섭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번길 **-* ***호 (경안동, 드림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59	49버6152	임*예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번길 **-* , *층(부평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60	16저3243	서*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동 ***호 (용암동, 중흥마을 부영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65	52더3958	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번길 *-** (만수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66	39누6616	황*선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 (용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67	인천32다9543	석*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번길 ** (서창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70	12서8558	정*경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서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73	23허9505	문*삼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 (경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75	26누9089	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동 ***호 (간석동, 신한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7 6	30두6492	유*기	경기도 시흥시 신천천동로**번길 ** 바동 ***호 (신천동, 연희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1	47도3219	이*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 ***동 ***호 (옥련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3	48거5614	안*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번길 ** ***호 (숭의동, 두언파크맨션)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4	50허1021	원오토렌트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 *층(석촌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5	51소5463	전*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가길 ** ***동 ***호 (방화동, 방화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7	66거4558	민*찬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번길 * *동 B**호 (학익동, 영신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8 9	70다9611	주*철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번길 **-** 가동 ***호 (주안동, 프라자빌라)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9 1	86오6127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삼성홈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9 2	94모7563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9 3	95부8368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A동 ****호 (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9 5	인천32다6005	서*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 (연희동, 웰카운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79 7	50조2964	송*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지로 ** *층 *호 (둔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1	29루3075	양*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번길 **-* ***호 (선학동, 한솔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3	59라9348	권*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4	87다8886	박*옥	경기도 하남시 수리북로**번길 * ***호 (덕풍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5	인천31도4950	이*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동 ***호 (구월동, 리라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6	07머9904	장윤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 ***동 ****호 (경서동, 청라한양수자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0 9	14어2226	김*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호(부평동, 서영센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2	24더4758	전*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번길 * B**호 (주안동, 금당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3	27로1153	배*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번길 *-** , ***호(세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4	29오8744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6	35부2706	박*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 (연희동, 청라자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7	45무9001	이*임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A동 ***호 (주안동, 힐튼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8	47루4997	김*희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번길 **-** ***호 (도화동, 목림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1 9	48버2341	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층 (간석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2 0	53어4959	서*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로**번길 ** ***동 ***호 (주안동, 신한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82 2	65나9832	김*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동 ***호 (간석동, 이화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3	86두6342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동 ***호 (산곡동, 한화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4	86어9548	권*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 ****호 (옥련동, 한국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5	86오8462	신*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 (연수동, 연수*차우성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6	88거2738	조*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마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7	90고9757	주식회사태경호텔(시흥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일도일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8	95도2065	김*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29	인천70라4744	문*남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33	32보7101	이*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가길 ** (암사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34	33수8702	구*중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 ***동 ***호 (정왕동, 건영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35	38수4370	이*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길 **-* (부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37	49노5157	김*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번길 *-* C동 ***호 (용진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38	49주1579	문*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번길 **-* *동 ***호 (정왕동, 반도파크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40	56어4527	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동 B**호 (청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46	경기51도7353	원*웅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번길 **-** ***동 ***호 (거모동, 신안그린빌*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48	인천06바7692	조*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 (남촌동, 삼호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0	26누2341	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번길 * , ***호(경서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1	18러2482	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2	36도6283	하*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3	64보5631	장*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번길 ** *동 B**호 (옥련동, 영남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4	92어2846	이*철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번길 ** *동 ***호 (용현동, 행복한집)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6	50도9070	이*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대양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7	64서3738	이*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59	11가3913	이*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 B**호(선학동, 선학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0	34로3604	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 (구월동, 대명노블리안)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1	13마6192	이*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A동 ***호 (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2	50마2799	임*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5	15누5966	김*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6	22루8995	전*애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번길 **-** ***호 (문학동, 시대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68	20버5976	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 (간석동, 신화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72	68머5791	송*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번길 *-* ***호 (임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75	27마4951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 ***호(잠실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77	42나9910	이*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 ***동 ***호 (평촌동, 초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78	45가8713	공*식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번길 **-* *동 ***호 (도창동, 에이플러스타운)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79	52더3958	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번길 *-** (만수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80	45고2365	서*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번길 **-* ***호 (부평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81	66거4558	민*찬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번길 * *동 B**호 (학익동, 영신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83	54너7595	임*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번길 *** *층 *호 (원종동, 대도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90	40부5401	박*원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 ***동 ***호 (운서동, 풍림아이원*-*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91	43두7884	김*국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번길 **-** ***호 (문학동, 성서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97	서울31러4182	(주)세광타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 유통상가 **-***(시흥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898	48저4871	최*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00	18누4843	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 (간석동, 성지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01	25서3727	장*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 *층 (대방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02	34라7392	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B동 ***호 (간석동, 청산그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09	27거9313	김*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번길 ** 나동 ***호 (청학동, 송학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10	12노3213	양*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번길 **-* (십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15	89가5378	김*옥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번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17	05마3350	유*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E동 ***호 (간석동, 신세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18	29너9971	정*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 ** (북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19	31모9026	유*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동 B**호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20	42다3825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B**호 (간석동, 삼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21	42어4037	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호(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23	66저7722	(주)더라이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번길 **(소사본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25	18거1710	김*배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번길 ** 나동 ***호 (가정동, 경성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27	86주6406	이*규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 (주안동, 대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32	18주2085	박*옥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번길 ** (산북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33	30가6897	장*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나동 ***호 (만수동, 장미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34	32버4730	남*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36	75루2010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38	인천32러3955	이*길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번길 **-** *동 ***호 (주안동, 부흥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42	03구2192	김*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 (숭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45	47저7297	김*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번길 ** *동 ***호 (관산동, 뉴한솔하이츠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46	57서4943	이*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 ***호(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48	67보5318	박*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49	68가7593	문*돈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50	76모4682	노*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 (와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51	84보3904	이*기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 ***호 (문학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55	89거1005	제이씨엔에스(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 폴리타운 ***호(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58	13다4227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 (간석동, 호암파크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0	15머8045	박*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호 (간석동, 신동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1	16모4571	박*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 (간석동, 우성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2	29오4819	김*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동 ****호 (연희동, 호반베르디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3	33라7746	김*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번길 ** (심곡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4	33보4107	김*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서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5	38마4523	(주)유니온플래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뉴인천빌딩 ***호(구월동)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6	41루8440	(주)오피스굿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 ***(부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67	50라9764	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 (간석동, 산장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0	72누6415	박*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1	73두4414	김*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9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2	73우7903	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우목안길 * (선부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3	서울52루7157	장*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호 (대치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4	인천80머4792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6	17소5634	이*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7	07마5952	전*성,전신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8	17주5186	주식회사 유퍼스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광진빌딩 *층(역삼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79	28마9117	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논현시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83	50로4432	주*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85	56저4647	(주)태영운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90	42주4787	유*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미리내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94	12서5838	전*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동원베네스트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95	28수7525	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층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96	39어3756	장*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번길 **-* ***호 (옥련동, 극동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0998	29더3140	방*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번길 ** ***호 (구운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0	62루9867	(주)삼지건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번길 **, ****호(상동, 금강리빌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2	23부7561	백*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 **-* (부평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3	28소5992	신*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길 ** ***동 ****호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6	53어5333	이*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 ***동 ***호 (목화하이츠)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7	59수7553	김*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번길 ** (역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09	경기43나9666	백*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길 ** (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0	16소7085	김*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1	20러6916	(주)영림세라믹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번길 **, **동 ***호(송현동, 산업유통센터)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4	40도6833	정*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 (이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5	50라5711	이*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동 ***호 (청천동, 수정홈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6	67무4039	이*미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번길 **-** *동 ***호 (용현동, 영주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7	68수8459	윤*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번길 ** B동 ***호 (산곡동, 수아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18	인천30러2545	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 ***호 (간석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0	95도7032	주식회사 엠제이중전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염로 **-**(간석동)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1	27마4951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 ***호(잠실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2	45가8713	공*식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번길 **-* *동 ***호 (도창동, 에이플러스타운)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4	05우8839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5	53루3788	김*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층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6	01주7010	신한골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영광빌딩 *층(역삼동)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8	25모4573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층동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29	26무4558	윤*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호 (부평동, 로체펠리스빌)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30	30다2581	정*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32	39조4500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 *동 ***호 (부평동, 청원하이츠)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33	40가1004	김*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길 ** (신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01034	46부3208	이*봉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 ***동 ***호 (월곶동, 진주마을풍림*차아이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3 6	50고1109	홍*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3 7	58수8268	권*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3 8	60주8091	황*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동 ***호 (도화동, 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3 9	65저9597	정*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0	80다8470	김*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번길 ** (삼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1	인천33머3221	김*연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 *동 B**호 (주안동, 인흥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4	22마4022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6	42도9386	고*방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번안길 ** B동 B**호 (광명동, 동북아그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7	56거5968	박*일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번길 ** ***호 (숭의동, 신성주택)	2015.07.30	2015.08.31		2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4 8	73두7355	김*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동 ***호 (산곡동, 무지개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5 1	32더4267	A*UNCION M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 ***동 ***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5 3	89노7657	(주)맑음누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길 **, ***호(창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5 4	96머2634	박*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 ***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5 6	05무5893	강*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 ***동 ****호(논현동, 휴먼시아 동산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0	59오6257	전*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 *동 ***호 (원곡동, 우성연립(*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2	77가3966	공*숙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층 (주안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3	11주5354	최*영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동 ***호 (검암동, 신명스카이뷰*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6	30부5096	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신한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7	69누8864	신*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8	서울31러6531	화성지류유통(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 젤코바빌딩 ***(인현동*가)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6 9	02가7126	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0	20로6273	김*덕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 ***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1	40도6833	정*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 (이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3	50더2771	한*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4	인천80라4129	이*기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층 *호 (용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5	09구4966	도*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광명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6	10모6056	전*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번길 ** ***호 (구월동, 성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7 7	11거8230	김*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B**호 (토당동, 스페이스*)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78	14누1183	박*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동 ***호 (청천동, 수정홈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81	33라7746	김*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번길 ** (심곡본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87	66거3401	(*)관용소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로 ***, ***호(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1	22거1550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2	24어2875	홍*현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번길 **-* ***호 (문학동, 은혜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3	25무8116	김*정	경기도 오산시 여계산로 ** ***동 ***호 (금암동, 금암마을휴먼시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4	29저9042	김*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길 ** (신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5	54어8888	이*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B동 ***호 (논현동, 코아루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8	93더4919	김*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099	96머2634	박*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 ***호 (이동, 굿모닝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01	01저3206	정*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번길 *-** ***호 (일신동, 지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03	08고6837	남*우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번길 **-* ***호 (연희동, 그린하나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04	15마9649	권*혜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번길 **-** ***호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06	35너1777	김*철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동 ***호 (목동동, 해솔마을*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07	41루8440	(주)오피스굿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 ***(부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10	55오8982	장*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 (구월동, 인성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11	58버154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층 (석남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12	59주5455	임*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동 ****호 (십정동, 주공뜨란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13	67도5557	원*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15	80보5620	정*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번길 * ***호 (연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1	38라8081	안*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한국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2	47라4211	최*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 A동 ***호 (검암동, 하모니카운티)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5	인천35더3100	안*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호 (남촌동, 레미안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6	61너1289	강*용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길 ** ***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8	06보8607	김*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 ***동 ***호(원흥동, 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29	10두5308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30	65구4903	김*성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A동 ***호(송정동, 삼성하이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33	인천33머4321	김*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 ***동 (청학동, 에덴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0135	01로3660	김*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36	67무7517	배*훈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관교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37	55수6449	주식회사 승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번길 **, **동 ***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38	17누4595	정*용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 *동 ***호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43	80도8857	조엽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가길 ** (구로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45	03부8288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번길 * *동 ***호 (구월동, 구월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47	09누3245	양*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 (만수동, 삼환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49	23조6545	박*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51	33라7746	김*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번길 ** (심곡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52	33보9849	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 A동 ****호(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56	51소6025	권*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간석동, 두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63	48러2645	유한회사스타모터스"상품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 , ***-*"상품용"(월성동)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67	96소7644	오*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길 ** (신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0	04오5667	장*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구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2	22두5965	정*훈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동 ***호(신흥동*가, 항운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3	38무6607	계*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4	39무5861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 ***호 (옥련동, 한국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6	45고2149	최*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가동 ***호 (삼산동, 영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7	50오2794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8	56도4920	최*성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번길 **-** (작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79	경기3쿠4992	김*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길 * (이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1	03도7599	강*환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 ***동 ***호 (운서동, 풍림아이원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2	05주4854	이*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번길 * (도당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4	40보7937	이*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5	50루5367	심*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호 (만수동, 청명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7	51구2229	유*숙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 ***동 ***호 (가좌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89	64버4255	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1190	73누8065	곽*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 (만수동, 삼환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93	86러1317	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다동 ***호 (만수동, 삼화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94	인천32더7789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호 (만수동, 정안연립)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96	29허8236	(유)전연령서영렌트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 상가동 ***호(봉선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01	28러2817	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한강로*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02	30주9735	강*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이츠)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04	64다2226	이*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2	30우4550	우*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3	13더1834	최*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 (소사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4	25노1833	장*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5	47러3828	황*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동중*길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6	56도1059	정*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송내동,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7	56러6519	조*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 *층호(금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8	67보5501	정*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대로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19	36보5752	이*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가좌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0	09도3307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오피스***호 (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1	26서9194	신*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2	48저4057	최*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APT)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3	50주1827	배*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4	58머4086	이*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번길 ** ****동 ***호 (호매실동, 수원호매실휴먼시아**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5	63로1621	유*열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번길 **-* *층호 (철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7	68너7690	이*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 *층(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28	서울31러6531	화성지류유통(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 젤코바빌딩 ***(인현동*가)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0	55고5654	고*자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번길 ** ***호 (학익동, 광림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2	51버2324	전*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호 (만수동, 남경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3	18수2201	박*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4	27마4951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 ***호(잠실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5	49머5363	최*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36	59로5814	(주)신일테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 ***호(구갈동)	2015.07.30	2015.08.31		8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240	60더5548	최*숙	인천광역시 남구 송림로 *** ***동 ****호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4 1	70가8956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번길 **, *층(일신동, 진한빌딩)	2015.07.30	2015.08.31		5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4 2	84보5783	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 *동 ***호 (신현동, 대웅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4 3	97어3097	홍*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번길 **-** *차동 ***호 (부개동, 중앙탑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4 6	11가3360	신*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 (고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0	45버7722	(주)제이엔스페이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비동 ****호(논현동, 코아루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1	45우5301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2	53어3138	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호 (만수동, 우성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3	59마8071	신*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4	69고3389	홍*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현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5 9	인천06바7692	조*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 (남촌동, 삼호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0	인천32마4760	강*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 (논현동, 휴먼시아 동산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1	01루6310	홍*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안동, 더웰드스테이트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2	03도6732	조*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 (가좌동, 조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3	17오2610	여*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4	21구6922	오*택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원문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6	26어5946	유*규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 *동 ****호 (용해동, 동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7	27소9941	(주)케이엔비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호(필동*가, 충무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6 8	31수5018	곽*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번길 ** 바동 ***호 (만수동, 서진다세대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2	69오5688	안*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3	86구7804	송*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동 ***호 (십정동, 대주파크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4	인천32거6028	김*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 ***호 (간석동, 우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5	69서2414	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 ***호 (구월동, 미래아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6	35주7863	김*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B동 ***호 (구월동, 삼환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7	86주6394	김*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가동 ***호 (주안동, 성은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7 9	16오2010	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1	69오6483	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A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더타워오피스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2	63누5503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6	58버7462	고*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번길 *** ***호 (구월동, 중앙레지던스)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7	62어3498	윤*대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호 (석남동, 제왕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8	05머4462	유*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부개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89	48거5127	김*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번길 * ***호 (청학동, 선화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93	10노2035	정*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 ***동 ****호 (월평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95	34누9267	김*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98	73고8461	박*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299	79가6762	이*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 ***호 (이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0	인천70마2193	유*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호 (연수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1	69고6719	전*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십정동, 평산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3	35소5528	오*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5	인천31구8626	최*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인천소래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6	64노1235	김*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길 ** (청파동*가)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7	인천32너8942	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08	75주8544	임*엽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호 (부평동, 산동산빌리지)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14	16무9247	송*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숲속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15	29나1783	전*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17	25우2226	이*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동 ***호 (계산동, 하나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19	33어1275	이*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길 *** (묵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21	69수2531	송*범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번길 * 라동 B**호 (석남동, 충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23	56누8107	김*도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번길 ** (주안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25	26노8415	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 **(A)동 ***호 (십정동, 은하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29	23우2290	여*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A동 ****호(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30	61누6286	최*석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 ***동 ***호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31	인천33머3221	김*연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 *동 B**호 (주안동, 인흥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33	인천34러7829	김*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번길 ** ***동 ***호 (작전동, 동보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3 5	04머3025	강*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길 ** (와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3 8	16오2049	신*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 *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1	33라7746	김*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번길 ** (심곡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2	34라7392	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B동 ***호 (간석동, 청산그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3	40어4961	이*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가길 **-* ***호 (갈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4	49조3994	구*숙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 *동 ***호 (신흥동*가, 삼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5	52머2705	김*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길 **-* (중곡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4 6	65고3791	김*수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 ***호 (운서동, 가나베스트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5 0	80서2790	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만수동, 우진아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5 2	86오5159	박*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번길 ** ***동 ****호 (서창동, 태평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5 6	20부6452	주*숙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 ***동 ***호 (정왕동, 건영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5 7	21우3863	이*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0	31부2349	이*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1	34버4150	박*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층 (쌍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3	42오1752	박*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가길 *-** (신길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6	66모7684	이*훈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번길 ** ***호 (정왕동, 시화공단*마)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7	68마9346	한*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층 ***동 ***호 (연수동, 연수주공*차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6 9	81더8947	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인천소래엘에이치*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7 0	83머7265	이*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번길 *-** (대화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7 1	89더2523	전*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 ***동 ***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구파발)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7 5	서울85나5608	김*익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길 * (정릉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7 8	26서9626	이*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0	28도2935	손*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1	28주8422	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2	31고8528	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A동 ***호 (간석동, 소망그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5	53머2501	추*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6	82로3607	김*미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번길 **-* (송림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 7	85보2631	정*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길 *** ***호 (화곡동, 은창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88	86보4011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십정동, 경인빌라)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94	11고2071	김*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동 ***호 (부평동, 부평현대더로프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95	20나7401	이*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 가동 ***호 (산곡동, 진흥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96	24보2040	임*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연수동, 연수푸르지오 *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3897	28루5095	전*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 (구월동, SR노빌리안*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0	40수2982	박*섭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 ***동 ****호 (왕길동, 검단자이*단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2	48로9620	최*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 *동 ***호 (신흥동*가, 삼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3	50두1109	김*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번길 ** 가동 ***호 (약대동, 하나베스트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4	53도3654	김*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 A동 ***호 (삼의골든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5	57도4412	이*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 (구월동, 아이원파크)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7	인천81마5412	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번길 ** ***호 (서창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8	충남35마4355	최*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 (간석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09	50루6792	양*우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 ***동 ***호 (주안동, 백조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10	02무6887	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12	30고2799	권*선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번길 **-** *층 (용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14	03다7113	케이디(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번길 **-**, 우림로데오스위트 ****호(장항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17	46어1039	이*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 , ***동 ***호(상도동, 건영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19	17조7405	우*준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 (석남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23	경기50라2610	구*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번길 **-** (수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24	18보4770	김*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번길 ** *동 ***호 (청천동, 드림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25	09허2613	주식회사 솔로몬렌트카(최홍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번길 **-**, ***호(인계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28	97누4381	김*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32	37모7236	박*혁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 지하층 (주안동, 명문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10010014035	57두9717	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호 (시흥동, 삼성홈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002	70머2471	윤*종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다길 ** (등촌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006	80모3492	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지층호 (비산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011	02고1200	조*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012	50거6014	박*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해피하우스)	2015.07.30	2015.08.31		2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14	인천32나8209	김*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 (만수동, 금호타운)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21	인천06마7175	(주)해양산업개발(99%),『한정선(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호(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2015.07.30	2015.08.31		9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25	34구5626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 ***동 ****호 (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27	03저3613	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B**호 (만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28	70두4987	선*숙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 (광명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32	67소5778	박*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 ***동 ***호 (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33	34라3342	백*태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번길 ** ***동 ****호 (월곶동, 월곶*차유호엔플러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35	56모3617	이*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37	인천33라7733	나*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호 (간석동, 궁전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38	94로1092	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호 (만수동, 국제탑스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46	서울31더6001	생활경제외국어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원창빌딩 *층(여의도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48	74호6779	(주)아스트로휴먼리서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 ***	2015.07.30	2015.08.31		9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49	64허5622	(주)하나아이플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0	68허8895	정*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가길 * ***호 (정릉동, *층)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1	33수2620	김*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 ***동 ***호 (항동, 매화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3	59허4482	양*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6	17수6855	양*완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 ***동 ***호 (상패동, 상패주공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7	22하8950	(주)퍼스트데이터인천지사오케이정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능대로 ***, *층 (연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58	22하2762	김*필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번길 * ***호 (정왕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0	45허5535	홍*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 ***동 ****호 (경서동, 청라한라비발디)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1	71호7230	정*송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번길 **-* (소사본동)	2015.07.30	2015.08.31		5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3	22호1749	장*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4	58호2681	윤*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번길 ** ***호 (상동, 하이센스빌)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5	04하1689	삼백정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승로*번길 *-* (만수동,*층)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6	24허7708	양*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포도마을)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7	67허6161	박*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 ** ***동 ***호 (도산동, 삼라미주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6 9	52허2045	유*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 (구월동, 하나로빌라)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3	01하2257	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길 **-* ***호 (삼전동)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4	12허9636	김*법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번길 ** ***호 (문학동, 장안주택)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5	46허8800	박*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 **/*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6	22호1978	LIU YUANDONG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번지 *호 향촌휴먼시아아파트 ***동 ****호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8	35하6075	(주)이너라이프	경기도시흥시 월곶해안로 **-** *층 (월곶동)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7 9	22호2921	(*)태영에코	인천 남동구 남촌동 ***-* **블럭 *롯트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0	07허4157	우*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B**호 (만수동, 영종파크빌리지)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1	02허6452	김*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2	25다6445	최*환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 ***동 ***호 (정왕동, 요진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3	59주5057	이*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번길 ** 나동 ***호 (청학동, 동남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6	35호7253	주식회사 이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강석로 ***,*** (마두동,축협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7	35호7254	주식회사 이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강석로 ***,*** (마두동,축협빌딩)	2015.07.30	2015.08.31		40000	법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8 9	50호4051	서*랑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 (구월동, 새롬노빌리안*차)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9 1	13하7319	(주)기현세라믹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말로 **번길 ** ***호 (연수동)	2015.07.30	2015.08.31		40000	사업자
송 달	288125201507200100009 3	50호1142	김*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안길 ** (와동)	2015.07.30	2015.08.31		80000	개인
송 달	288125201507200100009 4	30호9513	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B동 ****호 (논현동, 에코메트로더타워아파트)	2015.07.30	2015.08.31		40000	개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계약해지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상위법에 의한 관련 조항 및 대상자 범위 추가(안 제1조,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매점관련 사항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 제한 삭제(안 제2조3)

○ 구 투자기관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계약해지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0조의2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해지 규정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별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032-453-2571,FAX 453-58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해지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의한 관련 조항 및 대상자 범위 추가(안 제1조,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매점관련 사항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 제한 삭제(안 제2조3)

○ 구 투자기관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계약해지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0조의2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해지 규정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별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관련조항 발췌자료

남동구 조례 제2015-1212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이라 함은”을 “"공공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투자기관”을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점"이라 함은”을 “"매점"이란”으로, “판매하는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신청인은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를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을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 ----------

	---
3. "매점"이라 함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판매하는 --------.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신청인은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구 지방공기업 ----------.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1. --------또는 구 지방공기업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계약) ①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또는 구 지방공기업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 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 ------또는 구 지방공기업 ------. - ----------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 ---------- -----. ---------- ---------- ---------- ---------- ---------- --- 또는 구 지방공기업 ---------- --.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 ---------- ---------- ---------- ------따른다.

[현 행]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 순위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안]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2013.6.28.개정)

제88조의3(공공단체의 범위와 매점의 규모)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2013.10.30.개정)

제88조의3(생업지원)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삭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13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소래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휴관일 조정(명절 연휴 → 당일) : 안 제5조
○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 : 안 제12조
○ 대관허가 시설 범위 조정(영상실) : 안 제29조
○ 관리 운영의 위탁 범위 조정 : 안 제37조
○ 상위법에 근거없는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삭제 : 안 제45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소래역사관 / ☎ 453-5631 FAX 453-56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탁 범위 등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역사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휴관일 조정(명절 연휴 → 당일) : 안 제5조

○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 : 안 제12조

○ 대관허가 시설 범위 조정(영상실) : 안 제29조

○ 관리 운영의 위탁 범위 조정 : 안 제37조

○ 상위법에 근거없는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삭제 : 안 제4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래역사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래역사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연휴**”를 “**당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되고**”를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과**”를 “**위촉직 위원은**”으로, “**인사를**”을 “**인사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회**”를 “**3회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다목적시청각실과 야외공연시설”을 “영상실”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래역사관”을 “역사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제45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실내전시실을 갖춘 역사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2번지에 둔다.	<삭 제>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 ----------당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 략)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수 있다.	----------.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 ① (생 략)	제1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
③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과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문화재 전문 인사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 ---------- ---------- ---------- ------인사 중에서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3회이내 ----------. ----------남은 ---------- ---------- ----.
제16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제16조(수당 및 여비) ---------- ----------대해서 ----------.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 지원) ① (생 략)	제20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해서 ----------.
제29조(대관허가 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29조(대관허가 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역사관 본관 2층 전시홀 및 다목적시청각실과 야외공연시설에 한한다.	② ----------영상실 ----------.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위탁운영 신청) 역사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래역사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운영 신청) ----------역사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45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② 대관자가 제33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역사관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해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보전 및 역사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2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13조)

   ○ 위탁기간 : 3년(안 제13조의2)

   ○ 위탁의 취소 조항(안 제13조의3)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951 FAX 453-5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제13조)

○ 위탁기간 : 3년(안 제13조의2)

○ 위탁의 취소 조항(안 제13조의3)

○ 위탁운영의 경우 관련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안 제3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설의 위탁)"을 "(관리 및 운영)"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탁기간)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조의3(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36조 중 "및"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위탁기간)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의3(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

	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규정한「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2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조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조항을 선택조항으로 개정 : 안제8조제6항
   -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조건에 따라 구청장이 등록취소하는 조항 삭제 :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453-2502 FAX 453-25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등록취소를 규정함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지적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조항을 당사자의 선택조항으로 개정 (안 제8조제6항)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구청장이 조건에 따라 등록취소하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관련 조례·규칙 점검계획』(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등록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4조(등록취소)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14조 삭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2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내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등 지역복지 현안에 적극 참여함에 복지참여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민간참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453-2502 FAX 453-25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내 저소득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복지 현안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복지참여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민간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동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본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기능) 제1항 제7호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 우리구 여건에 맞는 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여 일원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32)453-2661, FAX : 032)453-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여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안 본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4.6.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구청장에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동종의 유사규칙을 폐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생활경제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32)453-2661, FAX : 032)453-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구청장에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동종의 유사규칙을 폐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간소화 추진

□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폐지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병합하고 신축상가 공고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일부조항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6조)

○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부적당한 장소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중 제외 규정 추가
-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추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제2항제1호마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2.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단, 신축된 상가지역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며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하되 신청자격은 공고 상가의 소매인에 한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 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단서 신설>	나.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생 략)	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지정대상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마.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1. ----------제3항에 따른 ----------.

(출입구가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다만,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2.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단, 신축된 상가지역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하며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하되 신청자격은 공고 상가의 소매인에 한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 설>	제6조(공고방법) ①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 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2014.1.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제한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조건 등의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32)453-2661, FAX : 032)453-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제한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조건 등의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함 (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제2호” 삭제한다

제15조 중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생 략) 2.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생 략)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

□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인원 및 회의 의결에 대한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인원 정비
-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임기 연임 횟수 2회로 정비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 결정권이 주어진 단서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32)453-2661, FAX : 032)453-6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인원 및 회의 의결에 대한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인원 정비 (안 제4조)
-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임기 연임 횟수 2회로 정비(안 제6조)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 결정권이 주어진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2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을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합”**을 **“회의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
제2조(설치)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 4. (생 략)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기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② ----------그 밖에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1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환경국장, 세무과장이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 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회의를 총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하되 2회에 한하여 ---. 〈단서 삭제〉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그 밖에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2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재고 및 주민들의 자율감량 동기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3]의 폐기물봉투의 규격 및 가격 중 일반용 규격봉투 가격 인상

○ 관련 법령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청소과, 전화 : 032-453-2553, FAX : 032-453-25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01년 이후 10여년간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없어 청소분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일반용(재사용) 봉투가격 인상안 적용

- 안 [별표3]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

용량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인상 가격	210원	390원	750원	1,850원	3,710원
인상액	50원	80원	130원	310원	640원
현행 가격	160원	310원	620원	1,540원	3,070원
인상률	31.2%	25.8%	20.9%	20.1%	20.8%

가격인상(안) (2015.10.1)	현 행	⇒	인상(안)
	리터당 31원 (평균)		리터당 38원 (평균)

○ 기타 조항 현행화(안 제23조 제1항 제1호, 안 별지 서식)

- 관련 법령 용어 등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에 따른 용어 정비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본 문 : “별첨 1”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 참고자료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6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월)
○ 2015년 제2회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생 략)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2.~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 1. ---------- - 의료급여수급자 2.~ 4. (현행과 같음) ② ---------- ---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 ---------- ---------- -----

[별표 3]

폐기물봉투의 규격 · 용도 및 가격(제14조 제6항 관련)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 (쓰레기를 담는부분)	가 격 (원)	용 도
5	26 × 31	210	일반용봉투
10	33 × 40	390	일반용봉투
10	36 × 36	390	재사용봉투
20	41 × 49	750	일반용봉투
20	45 × 45	750	재사용봉투
50	56 × 67	1,850	일반용 봉투
100	71 × 85	3,710	일반용 봉투

주)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1)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2) 봉투의 길이 : [{반지름(r)× 반지름(r)× π} ÷ 봉투용량] + 지름(d)

(별지 제1호 서식) (제18조 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사항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1.담배가게( ) 2. 아파트 노인회( ) 3.기타(동 추천장소) ( )			
※ 해당란에 O표하고 영업형태를 자세히 기재				
점포규모	㎡	소유현황	1.자가( ) 2. 임대( )	

【 약 도 】

위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9조 제1항 관련)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변경신고서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지 정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하 고 자 하는사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주 소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위치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19조 제3항 관련)

종량제봉투판매소【폐업·휴업】신고서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지 정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를 폐업·휴업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27조 제1항 관련)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 년 월 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 년 월 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27조 제2항 관련)

제 호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28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⑩과태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2항 관련)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인

(별지 제8호서식) (제27조 제3항 관련)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⑥과 태 료 금 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고 제2015-12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설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7. 3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남동경기장 수익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규 모**

- 수익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지하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3,442.23	
지하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904.78	
계		8,347.01	
지상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11,393.34	
	제2종근생(사무소)	**205.84**	용도변경
	제2종근생(제조업소)	**158.46**	용도변경
계		11,757.64	
지상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7,284.89	
지상3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429.39	
계		23,471.92	
합계		31,818.9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 수익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유상 임대사용자

사용자	소재지	호실	수익시설 면적(㎡)	사용용도
(사)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복지증진회 문**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1층)	25, 125, 126, 127, 129, 130, 131, 132, 133	364.3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제조업소)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 6.2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2	체육용지	67,313.9	67,31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해당 없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4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7.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07.27. ~ 2015.08.09. (14일간)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 업 주	소 재 지	비 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간석2-2008-2	인 터 뷰	박 * 희	석산길 138, 1층(간석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청문일시 : **2015.08.10.(월)** 10:00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4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15.07.27.~2015.08.09.(14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08.10.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 고 (말소예정일)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1-01	인천시청역자판기 [인천시청역(2대), 예술회관역(2대)]	이*우	예술로 264(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9.30	2015.08.10.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5 2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15. 07.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4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07.30. ~ 2015.08.12. (14일간)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 업 주	소 재 지	비 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간석3-2001-25	고가보석	고 * 태	경인로 668(간석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청문일시 : **2015.08.13.(목)** 10:00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5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07.30. ~ 2015.08.12. (14일간)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 업 주	소 재 지	비 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구월1-2001-1	중앙도서관 지하매점(1대)	이 * 우	정각로 9(구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청문일시 : 2015.08.13.(목) 10:30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5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07.30. ~ 2015.08.12. (14일간)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 업 주	소 재 지	비 고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2-4	GS25 편의점	성 * 용	구월로 247, 1층(구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청문일시 : 2015.08.13.(목)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10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2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9-2, -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2	2009.11.16	행정구역명(간석동)을이용하여간석로로제명	2015.7.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간석로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3	2009.11.16	음실로서쪽에위치한도로임을반영하여제명	2015.7.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음실서로1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3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D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5번길	20	2014.07.25	선수촌공원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 약56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임을반영하여제명	2015.7.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55번길20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20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D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5번길	11-16	2014.07.25	선수촌공원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 약56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임을반영하여제명	2015.7.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55번길11-16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11-16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근생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31	2009.7.6	인천과하와이를상징하는인하대에서시작하는도로임을반영하여제명	2015.7.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하로63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31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	2015.7.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34번길	31	2015.7.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5-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34번길	33	2015.7.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22	2015.7.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156번길	4	2015.7.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88	2015.7.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9	2015.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7	2015.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